

한약육성법의 함의 및 발전방향

정혜인¹⁾ · 김경한²⁾ · 이준혁³⁾ · 김대영⁴⁾ · 성수현⁵⁾ · 이응세^{6)*}

¹⁾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²⁾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³⁾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부 한의정책팀장

⁴⁾ 한국한의학연구원 경영본부장

⁵⁾ 한국한약진흥원 정책본부 의료정책팀장

⁶⁾ 한국한약진흥원 원장(前)

A Review and Implication of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Hye In Jeong¹⁾, Kyeong Han Kim²⁾, Junhyeok Yi³⁾, Daeyoung Kim⁴⁾,
Soo-Hyun Sung⁵⁾, Eung-Se Lee^{6)*}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³⁾ KM Policy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⁴⁾ General Director of Management Strateg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⁵⁾ Department of Policy Development,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⁶⁾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review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Method : We searched document abou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We used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https://www.law.gov.kr>) to find the revision of the act.

Results :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and the law was revised four times in tota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was not only expanded, but also the establishment and rol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were extended. Specific descriptions of Korean medicine technology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and laws that are less effective should be revised and the rol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Conclusion : For the future of Korean medicine, in-depth consideration is needed on how to foster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Revision, Korean Medicine Policy

• 접수 : 2022년 8월 2일 • 수정접수 : 2022년 8월 13일 • 채택 : 2022년 8월 17일

*교신저자 : 이응세, 06097 서울 강남구 선릉로 604 호산플라자 203호

전화 : 02-564-2060, 전자우편 : leeeungse@gmail.com

I. 서론

한의학육성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다양한 한의학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한의학(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학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한의학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한의학육성법은 한의계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에 한의사 제도가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공중보건의, 군의관 배제 등 제도권에서 소외되었다.¹⁾ 이 중 특히 1977년 의료보험 제도에서 배제된 이후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방의료 정책백서’를 집필하는 등 관련 자료 수집과 대처방안 마련에 힘썼다.²⁾ 이후 ‘의료보험 한방수가 산정 기준안’을 제출하거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등 의료보험에 한방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1980년대 ‘총결산 좌담회’에 따르면, 한방의료보험, 국립한의학연구소, 한방근의관, 한방공중보건의, 맹인안마사 문제, 침구사 문제, 한약업사 문제, 약사법 문제, 국가고시과목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1993년 시작된 ‘한의학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운동’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7가지 내용의 ‘대정부 촉구안’을 결의하게 하면서 한의학육성법 제정의 추진동력이 마련되었다. 한약분쟁으로 더 잘 알려진 해당 사건을 통해 당시 보건사회부 내 한방의료담당관 설치, 한방 의료보험제도 정착,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실시 등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함께 한의계는 10여년간 지속적인 노력 결과로 2003년 한의학의 전반적 육성을 위한 ‘한의학육성법’ 제정이 이루어졌다.³⁾ 이는 그동안 다중의 의미로 혼용된 한의학 관련 용어 및 정의를 ‘한의학’과 ‘한약’을 포함한 한의학 관련 법적으로 정의하고, 한의약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계기였다.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한의학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에는 한의학의 정의를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한의학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한의학을 전통적인 학문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⁴⁾, 한의학육성법을 근거로 5년마다 한의학 종합 육성을 위해 수립되는 범부처 계획 또한 목표 대비 실 투자율이 낮아⁵⁾ 법률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의학육성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의학육성법은 폐기해야 한다⁶⁾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국무원에서 중의약 조례를 만들어서 중의약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중의약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 중의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⁷⁾ 법률 제정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늦어졌지만 ‘중의와 서의를 함께 중시한다’는 ‘중서의병중’ 원칙을 위생업무방침 중 하나로 결정하고, 서의와 대등한 의료체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법률에 담아내었다. 그 결과 중국의 중의약 관련 주요 지표들은 9년 만에 2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육성법의 개정 연혁과 현황, 제한점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원

본 연구는 한의학육성법이 제정된 2003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발표된 국내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한의학육성법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을 이용해 개정 및 현황정보를 수집하였다. 다만, 타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용어 변경 등으로 개정되는 ‘타법 개정’의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의학육성법의 제정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크게 한방의료 행위 정의의 확대⁹⁾¹⁰⁾¹¹⁾, 한의약진흥원 설립 및 역할 확대¹²⁾¹³⁾ 2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각 각의 내용에 대한 국내 논문과 보고서, 신문 기사를 통하여 법률 개정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전체 연구원에게 공유하고 한의약육성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 중 유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합 등을 위하여 법률이 개정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한방 의료행위 정의의 확대

한의학의 의료행위는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 제2조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면서 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한방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은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처음으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헌재 1996. 12. 26. 93헌자65). 이에 근거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의 정의 중 의료행위를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해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문건에서의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방의료담당관실 민원답변(2004년 12월)에 따르면 한방의료 행위를 “한방원리에 의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진찰, 검안, 투약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

III. 결과 및 고찰

1. 한의약육성법 개정현황

1) 개요

한의약육성법은 2003년 제정 이후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 외에 총 4회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의

Table 1. 「한의약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개요

| 개정일 | 주요 내용 | 입법의원 |
|---------------------|---|---------------|
| 1차 (2007.1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가능 한의약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정부 |
| 2차 (2011.7.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의 의료행위’ 용어 정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의 정의 중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 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함 | 윤석용, 최영희 |
| 3차 (2012.1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체계 및 단어 정리 | 정부 |
| 4차 (2019.6.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의약진흥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남인순, 기동민, 송옥주 |

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법원에서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 11945 판결),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 6. 40. 선고 2005누1758 판결).⁹⁾¹⁰⁾

하지만 한의학은 실용학문으로 사회, 문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 한의약 관련 기술이 현대화됨에 따라 의약 분야와 혼재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의 의료의 정의를 과거에 전통적인 의료행위만으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전통에서 유래하였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기에는 현대 의료행위의 특징이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전통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한의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모든 의료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문적 기초나 진단방법, 치료방법의 특성 등에 따라 명확하게 의-한 의료행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상호 중첩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의-한 포괄적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의과의 모태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의학-전통의학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¹¹⁾

3) 한의약진흥원 설립 및 역할 확대

제13조(한약진흥재단) 조항은 이전의 한약진흥재단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적용되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한의약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 2015년 12월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장흥)을 조직·인력을 통합하고, 한의약정책본부(서울)를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하

지만 그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명칭과 부합하지 않았으며, 한약사(韓藥事)만을 위한 재단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설립 목적을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에서 한약사와 한방의료행위, 즉 약제와 치료를 포괄하는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였고, 설립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다.¹²⁾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업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고,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과 같은 업무를 추가하며 이를 위한 운영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명칭변경과 함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있던 한약진흥재단 업무를 한의약육성법에 명시하여 한의약 관련 정책·제도,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한약 안전관리, 산업 등 육성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기관을 활용하여 한의약 육성 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¹³⁾

2. 「한의약육성법」 발전방향 제언

한의약육성법의 목적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의약 정의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을 포함하여 한의약이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제반 기술을 포함한다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목표를 한의 의료현장에서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한의약 기술범위 구체화 필요성

먼저 한의약 기술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한의약육성법은 전반적으로 “한의약 기술”에 대한 과학화·정보화 등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 한의약기술을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제시하고 있다. 별표에서는 한의약기술의 범위를 한방의료관련 기술과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세분화하고 있다. 별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범위에 과학기술의 발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방의료기술 표준화’와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 기술’이 ‘한의약공공보건기술’에 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자체의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추진 현실화

다음으로 법에 제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는 국가는 한의약 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4차례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시책을 세우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 수립 및 추진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제시하고 있어 한의약육성법의 지역계획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방임상센터의 경우에도 설치에 대한 근거만 법률에 제시하고 있을 뿐 선정, 운영, 평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한의약진흥원 역할 강화

마지막으로 한의약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2018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하여 기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한의약 소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 비임상센터(GLP)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등의 위탁생산을 위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의 의료서비스의 근거 구축을 위하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으

며, 조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기술을 위한 기초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기관 및 역할 분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의 보다 명확한 근거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부금이나 기타 수익금과 같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의계가 다양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다. 특히 한약분쟁(한의약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 의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로 인해 한의계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주요 한의약 관련 정책을 도출하였다. 한의약육성법도 그 정책의 추진 결과로 제정 되었다.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당시 한의계가 제시하였던 대부분 정책 과제는 현실화 되었으나 미래 한의계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영역을 성장·확장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법은 제정이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의 20년 세월을 보면서 법은 개정을 통해서 진화·발전하기도 퇴보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20년이 지난 오늘 시점은 국민건강증진과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지난 시간 동안 행해진 제정과 개정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고 되돌아 봐야한다. 그 결과를 반성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여 한의약육성법에 체계적으로 담아내어 법적 환경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으며, 한의약도 법과 정책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한의계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을 토대로 한의약육성법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Data from the conference on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revision committee,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1993.
2.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white paper on policy of korean medicine 1st edition, Seoul: 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 1990.
3.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white paper on policy of korean medicine, Seoul: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2009.
4. Lee HW, The Legal Perspectives of the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7; 21(2): 45-53.
5. Ku NP, Seol SS, Limits of Innovation in Korean Medicine Industry,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015; 18(4): 667-692.
6. The Medical Association, "Let's scrap the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Promotion Act". Available at: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67648> (Accessed 2022.07.25.)
7.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Report on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Medicines Act, 2017.
8.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hina's National Chinese Medicine System, 2021.
9. Kwon SJ, Eom SK, The Concept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nd the Limitations - Focusing on Legislations and Precedents -,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5; 28(1): 121-133.
10. Kim SH, Medical malpractice in Korean medicine,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09; 58(6): 358-388.
11. Baek KH, Chang YH, A study of Court precedents about concept and nested conditions of the West and East medical treatm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14; 22(1): 123-143.
12.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Partial amend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2011.
13.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Partial amend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2018.